

회계처리 기준

I. 결산회계처리

1.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회계처리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

나.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평가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누계액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중 미실현된 재측정요소 누계액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개정 2012.4.5>

라.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마.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평가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바. 미수수익은 전액 보정한다. 다만, 다음 (1)내지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유 담보물의 처분과 같은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감독규정 <별표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해 고정,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하거나 상각한 경우

(나) 신용등급 악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다) 채권 재조정으로 인하여 원금, 이자 또는 관련 수수료 면제 또는 지급 연기로 채권이 감소한 경우

(라) 차주에 대해 파산선고 또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마) 차주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연체채권 (연체채권의 정의 및 연체기간의 산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위 (1) 또는 (2)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현금수입에 의한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4) 위 (1) 내지 (3)에 해당되더라도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의 예치금 또는 납입액이 관계대출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 범위내에서 미수이자를 보정할 수 있다.

2.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위 제1호 중 "가", "나", "라", "바" 항목만 적용된다.

II.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부채

1.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부채에 대해서만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자산·부채의 당기손익인식 항목 지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3.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산출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적합성을 주기적이고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금융자산·부채의 당기손익인식이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야 하며, 동 결과를 문서화하여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Ⅲ. <삭제 2018.4.4.>

Ⅳ. 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손준비금(가결산 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한 아래 항목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가. 당해 결산기간(상반기 가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나.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적립후 순이익

다. 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순이익